

**■■■■ Question** 보통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은 매월 실시하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쓴 안전관리비 내역을 매달 정산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2~3개월에 한 번씩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번호 : 2119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12.5)제10조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문제는 일반적인 건설비용의 정산방법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선임조건외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안전관리 전담요원이 아니고 현장의 관리업무를 병행하도록 회사 내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겸직의 허용이 가능한지요?

질의2) 상기사유를 들어 전담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도록 지시 또는 안전관리자 겸직금지를 지시할 수 있는지요? 또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번호 : 377 ]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공사금액 120억(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동 법 시행령 제13조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동 법 시행령 제 14조(별표4)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 규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전담안전관리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아울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및 제9조(확인)에 의거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당해 현장은 하도급 공사로 택지조성공사를 수행 중 단지 내 상수도 신설 및 전력구 설치 등 기타 각각의 발주처로부터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800억 이상으로 증액되었는바 총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접수번호 : 1021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제1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시공 중인 동일부지 내에서 추가로 공사를 계약하여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 하에 시공하고 있다면 각각의 발주처에서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각 발주처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 준공된 공사의 금액은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Question** 건강검진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올해부터 채용시건강검진의무가 폐지되면서 당해 입사자도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채용 시에 건강검진을 한 경우(검진비용 사업주부담)에도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의무사항인지 근로자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예 :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검진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 따로 검진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이 없다면 사업주의 부담으로 매년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번호 : 15288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 질의1은 동 질의내용과 같이 2006.1.1.부터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던 채용시건강진단 제도를 폐지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채용)한 당해연도부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이는 채용시건강진단 폐지에 따라 약해진 근로자 건강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2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 중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인 의료보호대상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관련 규정에 의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